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925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명칭 변경, 공제금액 법률 규정 및 영세 납세 자 추가공제 근거 신설 등(정태호의원·박수영의원안)	3

I. 개요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92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 박수영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5. 12.

(3) 회 부 일 : 2026. 5. 13.

나. 제안이유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20년간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음.

그러나 정부는 2026년 2월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하면서 전자신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제액을 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5천원으로 대폭 축소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과 최저 수준의 징세비를 자랑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자의 세정협력에 따른 부담과 희생으로 이룬 것으로, 유일한 납세협력비용 보전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지난 20년간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어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와 개선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대폭 축소함.

이에 정부의 행정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항구화하고 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추가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함(안 제104조의8의 제목).

나. 소득세, 법인세 과표 및 세액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2만원으로 하고, 일정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하도록 함(안 제104조의8제1항).

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1만원으로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 공

제하도록 함(안 제104조의8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명칭 변경, 공제금액 법률 규정 및 영세납세자 추가공제 근거 신설 등 (정태호의원·박수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8) ☐ 세액공제 대상 신고 및 공제액 -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건당 1만원 - 부가가치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건당 5천원	☐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 변경(안 제104조의8) ☐ 세액공제 대상 신고 및 공제액 -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 2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 1만원(간이과세자: 1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정태호·박수영의원안 2026. 5. 12. 발의(의안번호 18925)

☐ 개정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의 제목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인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건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건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고, 일정한 영세납세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세기본법」¹⁾에 따른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1999년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2000년부터 전자신고 제도가 시행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금액(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2021년부터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도입하였음.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등의 세목에 대해서는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는데,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본회의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안과 달리 해당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됨.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의 폐지가 이루어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어지지 않자, 2026.2.27. 대통령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을 1/2로 감액하였음.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주요 변화]

적용연도	주요 변화 내용
2004	○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설 - 공제액: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 공제대상 세무대리인: 세무사·세무법인 - 공제액: 납세자 1인당 1만원(공제한도 연 100만원)
2005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확대: 세무법인의 경우,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인상
2006	○ 공제대상 세무대리인에 회계법인 추가: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2008	○ 세무대리인 공제액 및 공제한도 확대: 납세자 1인당 2만원(공제한도-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 500만원)
2009	○ 세무대리인 공제액 및 공제한도 확대: 납세자 1인당 4만원(공제한도-세무사 연 3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 800만원)
2010	○ 세무대리인 공제방식 변경: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으로 변경
2012	○ 공제대상 세무대리인에 공인회계사 추가: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액 상향: 세무사·공인회계사 연 4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 1,000만원
2019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액 축소: 세무사·공인회계사 연 3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 750만원
2021	○ 공제대상 세목에 양도소득세 추가
2026	○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액 감액(정부 시행령 개정) - 공제액: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1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5천원

개정안은 정부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규모 축소조치에 대응하여, ①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② 공제액을 법률에 명시함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 이전 수준으로 공제규모를 환원하며, ③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

세자에 대하여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04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시행 이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율은 상승하는 추세이며, 조세지출의 규모도 전자신고건수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024년 전자신고율은 소득세 99.8%, 법인세 99.7%, 부가가치세 98.2%이며, 2024년 기준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체 조세지출액은 1,98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연도별 전자신고비율]

(단위: %)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소득세	91.0	95.2	96.5	97.3	98.5	98.5	99.3	99.5	99.7	99.8
법인세	98.6	98.8	99.0	99.2	99.3	99.4	99.6	99.6	99.7	99.7
부가가치세	90.0	91.6	92.8	94.2	95.3	94.9	96.1	97.1	97.8	98.2

자료: 기획재정부

[전자신고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소득세	617	684	766	827	829	847	1,105	1,282	1,468
법인세	23	25	30	30	27	27	28	29	29
부가세	322	351	376	401	393	399	411	446	488
합계	962	1,060	1,172	1,258	1,250	1,273	1,544	1,757	1,984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의 명칭 변경

□ 개정안은 현행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있는데, 동 제도가 전자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국세행정의 전산처리 과정에 협력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 있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전자신고 제도는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신고자료의 정리, 입력, 검증 및 전송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됨.

납세자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²⁾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서면신고 시 과세관청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신고서류 입력 및 오류 검증 등을 납세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세액공제의 형태로 지원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동 세액공제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전가된 납세협력비용 중 일부를 보전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협력비용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신고가 정착된 이후에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협력에 기초한 행정비용 절감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

2)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서 개정안은 동 세액공제의 성격 중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보전”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려는 것임.

다만 정부는 ① 동 세액공제는 전자신고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전자신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면, 납세협력비용은 모든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명칭변경은 부적절하며, ② 홈택스(인터넷)·손택스(스마트폰) 등 전자신고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서면신고보다 전자신고가 간편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전자신고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보전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임³⁾.

그러나 개정안의 명칭변경 취지는 모든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원칙을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률상 존재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임. ① 전자신고는 단순한 신고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수행해야 할 과세자료의 입력·전산화·오류검증 등을 납세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특수성이 있으며, ② 전자신고가 서면신고보다 편리하다는 점은 전자신고의 이용상 장점에 대한 설명일 수는 있으나, 납세자가 신고자료를 정리·확인·입력·검증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명칭은 전자신고자에
게만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자신고 방식으

3) 202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로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36.4%),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름’(27.4%)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은 6.7%에 불과함. 또한, 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88.1%가 유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2024 조세특례입의심층평가. 2024년 7월 10일 ~ 2024년 7월 18일에 503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로 이행되는 특정한 납세협력비용의 일부를 보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전자신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임을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나. 정부의 공제액 하향조정에 대한 환원

- 개정안은 정부가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향 조정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시행령 개정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려 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동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의결되었음. 그럼에도 2026년 2월, 정부는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소득세·법인세 공제액을 건당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건당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감액하였는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존속 필요성 및 영세사업자 부담완화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불분명함.

특히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의 실질적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공제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효과가 상당부분 축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공제금액을 과거 수준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은 해당 조세특례의 적정 지원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국회 심사를 통해 직접 결

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에 대하여 정부는 ① 2024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은 없고, ② 2026년 공제액 축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한 조치이며, ③ 공제액은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① 2024년 국회 심의 당시 정부가 제출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안이 국회에서 수용되지 않은 점, 영세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논의가 정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전자신고율 상승 및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공제금액을 일괄 감액한 것이 국회 심사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②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단순한 전자신고 유인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신고 기반의 국세행정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성격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필요성을 전자신고율 상향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행정비용 절감효과, 납세자의 협력비용, 영세사업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신고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③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의 실질적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략적인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추가지원의 적정성

- 개정안은 ① 과세표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 시 2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1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영세납세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한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려 것임.

영세납세자는 일반 납세자에 비해 회계·세무 인력과 전산처리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전자신고 과정에서 직접 신고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신고대리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영세납세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신고비용 부담 완화 및 성실신고 유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

특히 간이과세자⁴⁾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이들이 전자신고를 통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일반 납세자와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정부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모든 신고자에게

4) 간이과세자 제도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방식보다 해당 목적에 맞게 설계된 별도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모두채움·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국세청이 별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개정안의 영세납세자 추가공제는 일반적인 영세사업자 소득지원이 아니라, 영세납세자가 전자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납세 협력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이므로, 모두채움⁵⁾·미리채움⁶⁾ 등 신고 편의 서비스와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대체관계라기보다 보완관계로 볼 필요가 있음.

또한 모두채움·미리채움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이는 장치이나, 납세자는 여전히 자료의 정확성 확인, 누락자료 보완, 신고내용 최종 확인, 오류 수정 등의 부담을 지게 됨. 특히 영세납세자는 세법 이해도와 전산 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 신고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실제 신고과정에서 부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소득세 및 법인세 전자신고의 경우 ‘영세납세자’에 대한 추가공제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영세납세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추가공제 대상의 범위를 심의과정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의 주요 항목과 납부·환급세액 등을 신고서에 작성해 제공하는 제도

6)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신고서의 일부 항목에 미리 입력하여 제공하고, 납세자가 나머지 내용을 직접 작성·확정하는 서비스임.

문 의 처
02)6788-5149